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

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, 신청서류에 의한 심사평가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선정 결과발표 후에 공사(제작)를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◈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**일체의 외주 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, *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니, 일부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***위법·부당한 방법 예시** :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3자 부당개입, 부실시공, 신청업체 휴·폐업, 사업장 양도, 관련 서류 위·변조,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, 유사과제 중복지원 등

◈ **시공(제작)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, 시공(제작)업체당 최대 3개로 참여를 제한**합니다.

◈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, 2026년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, 2026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, 2026년 옹진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, 2026년 부평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, 2026년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「환경개선사업」등 본 **센터 및 군·구, 타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수혜 불가**합니다.

경영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『**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**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7일

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

1. 사업개요

▣ 신청자격 (※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)

· **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고,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***
(개업연월일 2025. 6. 17일까지 신청 가능, 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)

※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

※ 법인 주소재지(본점 소재지)가 타 지역인 경우 신청 불가

※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
*** 지원대상(소상공인 기준) 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것**
-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될 것[별표1]
- (상시근로자 수 기준)
  ·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·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
▣ 신청·접수 기간 : 2026. 6. 17. (수) ~ 6. 30. (화) 18:00까지

· 방문 접수 : 6. 26.(금) 09:00 ~ 6. 30.(화) 18:00까지, 3일간(점심시간 12:00~13:00)

▶ **접수처 : 인천시 서구 봉오재3로 140(가정동 646-1) 인천신용보증재단 4층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**

▣ 접수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
· **온라인 접수**(※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.)
-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사진 등 제출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온라인 작성
- 센터 홈페이지(www.insupport.or.kr)>회원가입>생애주기지원>온라인 접수

※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,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**(대표자로 회원가입)**

· **방문 접수(※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)**
- 사업 공고 확인 후에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발급하여 대표자 직접 접수(신분증 지참)
-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,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(개별신청 원칙)

▣ 제출서류(신청 시)

※ 유 의 사 항 ※

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(탈락 포함)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접수 기간(6.17~6.30)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미비 서류 보완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**온라인 접수 : ❶~❸번 홈페이지에서 작성, ❹~❽번 서류 발급 후 홈페이지 업로드**
- **방문 접수 : ❶~❽번 서류 출력 및 작성하여 대표자 센터 방문 제출**

구분	제출서류 목록(필수)
필수	① **지원신청 체크리스트 [서식 제1호]**
	② **지원신청서 [서식 제2호]**
	③ **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 [서식 제3호]**
	④ **견적서 [서식 제4호]** ※ **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** - 시공(제작)업체는 **인천시 소재 업체**에 한하며, 자체 견적서 사용 가능 - **시공(제작)업체 주소 및 연락처 기재, 시공(제작)업체 대표자 도장 날인 필수** - 부가세 포함하여 제출, **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** - 단위사업 내 세부항목을 복수 지원할 경우, 각 항목별로 견적서 제출
	⑤ **사업자등록증명원 (*6.17일 이후 발급분)**
	⑥ **지방세 납세증명서 (*6.17일 이후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** 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불가 * 발급처 : 정부24 및 위텍스(온라인), 군·구청 및 행정복지센터(오프라인)
	⑦ **매출액 증빙서류** (**2년치 자료 제출**,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) - 과세사업자 : 2024·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 - 면세사업자 : 2024·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* 발급처 : 정부24 및 홈택스(온라인), 행정복지센터(오프라인)
	⑧ **상시근로자 확인서류 (*6.17일 이후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** - (대표자 포함)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**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** * 발급처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https://www.4insure.or.kr) - 1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 4대 보험이 없는 경우 **: (대표자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* * 발급처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,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
해당 시	**소상공인확인서(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 서류)** ※「소기업(소상공인)」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(유효기간 내) * 발급처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
	(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) 통합위임장[서식 제5호]

※ 서류 작성 시, 유의사항

·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(매출액 증빙서류 미제출) 전년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율 점수 최하점 부여

·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, 통합위임장[서식 제5호] 작성하여 제출

▣ **지원 규모 : 125개 업체**(※ 예산 한도 내, 지원 규모 변동 가능)

▣ **선정 절차**

· 1차 : 서류심사 **(※신청 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는 1차 서류심사 탈락)**

· 2차 : 내부 정량평가 심사 기준항목에 의거 심사 진행, 고득점자순으로 선정

▣ **선정기준**

· 평가항목

- 정량평가 : 업력, 전년도 매출액, 매출액 감소율(2024~2025년), 경영환경개선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

※ 매출액 산정방식 : '24년·'25년 개업한 소상공인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

[예시] 개업일이 2024년 5월 20일, 24년 매출액이 8,000만원인 경우

(8,000만원÷8개월)×12개월=**1억 2천만원**

↳ **2024년 환산 매출액**

[예시] 개업일이 2025년 3월 30일, 25년 매출액이 8,000만원인 경우

(8,000만원÷10개월)×12개월=**9천 6백만원**

↳ **2025년 환산 매출액**

※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은 2024년 매출액 확인 불가하여 매출액 감소율 점수 최하점 부여

· 가점사항 (※ 최대 5점)

- 공고일 기준 인천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(3점)
- 2026년 센터 교육(스마트스토어 및 디지털마케팅 교육) 또는 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수료 업체(2점)
- 2025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업체(1점)

▣ **최종 선정발표 : 2026년 7월 말 예정**(※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※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되오니, 신청서상에 **대표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.**

2.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

❶점포환경개선, ❷홍보 및 광고, ❸위생 및 안전
3개 분야 중에서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▣ **지원내용**

단위사업명	세부지원 내용	한도액	지원규모
점포환경개선	- 매장 내·외부 인테리어 (도배, 바닥, 조명, 샷시, 닥트, 어닝, 썬팅 등) - 제품 진열대 및 수납장 - 입식 좌석 개선(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경우)	**최대 250만원 이내** **(공급가액 100%)**	85개 업체
홍보 및 광고	- 홍보물 제작(전단지, 카달로그, 리플렛, 판촉물, 현수막, 배너, 포장 용기, 제품 포장박스, 쇼핑백 등) - 오프라인 홍보(버스·지하철 광고, 아파트 전단지함 광고 등) - 홈페이지 제작	**최대 250만원 이내** **(공급가액 100%)**	30개 업체
위생 및 안전	- 위생 관리(매장 방역 및 소독, 매장 내·외부 청소 등) - 안전 관리(CCTV 설치, 전기, 가스 등)	**최대 200만원 이내** **(공급가액 100%)**	10개 업체

▣ 신청 시 유의사항

· 대표 **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(법인 포함, 대표자 기준)**

※ 2025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및 2026년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

· **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**하며, **단위사업 내 세부지원 내용은 복수 선택 가능**(※ 최대 한도액 내에서 지원)

점포환경개선	도배+바닥 공사	➜	**신청 가능**
점포환경개선+홍보 및 광고	도배 + 판촉물 제작	➜	**신청 불가능**

· 선정 결과발표 후, 사업 기간 내 완료보고서 제출 (※사업 기간 : 8월~9월)

· 방역 및 청소 용역비용은 사업 기간(8~9월) 내에 수행한 것만 지원함

· 홍보 및 광고의 경우, 업체명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 진행 후 결과물 제출

· 선정업체는 경영개선 작업 완료 후에 **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, 지출 증빙자료를 9/30(수)까지 센터로 제출.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 처리**

▣ 지원금액

지원금액은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(250~200만원)을 무조건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.
사업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오니 신중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.

: **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 100%(원 단위 절사),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이내 지원**

※ 자기부담금 : 공급가액 초과금액 + 부가세(VAT)

(예시) 공급가액이 원 단위일 경우, 원 단위 절사(공급가: 2,400,005원▶지원금: 2,400,000원)

참고 지원금액 산출 예시

공사내용	견적금액			센터 지원금액 (공급가액 100%)	자기부담금 (공급가액 초과금+부가세)
	공급가액	부가세	합계		
도배 및 바닥공사	300만원	30만원	330만원	**250만원**	**80만원**
	250만원	25만원	275만원	**250만원**	**25만원**
	200만원	20만원	220만원	**200만원**	**20만원**

▣ 지원 불가 사항

· 전자·전기제품 및 기계 등 자산 취득성(처분 가능한) 물품 구매, 렌탈 비용, 중고시설, 일회성 소모품,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등은 지원 불가

- 지원불가 : PC, TV, 냉장고, 냉동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공기청정기, 소파, 의자, 테이블, 샴푸대, 가구, 집기류, 건물 외부 보수, 위법 품목 등은 지원 불가
- 지원가능 : 사업장 방역용 해충퇴치기, 손소독기, CCTV 등

· 최종선정 결과를 받은 이후에 시공(제작) 진행. 이전에 진행한 시공(제작)은 지원금 지급 불가

▣ 신청제외 대상

·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
· 본 센터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및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

· 본 센터 2026년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 선정업체 및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

· 본 센터 2026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선정업체 및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

· 2026년 군·구 및 타 기관 **유사 지원사업***으로 지원받은 업체

*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(옹진군),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강화군),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(부평구) 등

· 2026년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「환경개선사업」선정업체
· 무점포 사업자*,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*무점포 사업자 : 사업장이 거주 주택, 운송수단,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(또는 대리점)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
· 단,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홍보 및 광고 단위사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(※ 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)
·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(사업자등록증 상 업태, 종목)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사업자
(예시) '건설업(인테리어, 건축 등)'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,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
· 매출액(수입금액)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2025년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"0"원으로 신고된 경우
·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· **사업자(업종, 대표자 등) 변경 및 사업장 주소 이전 예정인 업체**
(예시)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신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
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계양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
·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)
· 소상공인 기준(❶매출액, ❷상시근로자 수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❶ 매출액 기준 :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[별표1]에 해당 될 것
❷ 상시근로자 수 기준
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
·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골프장, 유흥주점 등)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에 해당되는 경우
· 국고보조금, 장기요양급여(국민건강보험공단)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 지원 불가(ex. 유치원, 어린이집, 장기요양시설 등)

3. 추진절차

▣ 진행절차

·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이 총 공사비용(공급가+부가세)을 시공업체로 선입금 후에 지출증빙서류 첨부하여 센터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

공고 및 접수		선정 심사 및 최종 발표		필수역량 교육 (*필수참석)		사업 진행 및 지원금 신청		지원금 지급
사업 신청서 및 서류 제출	➜	선정업체 최종 발표	➜	선정업체 교육 참석	➜	제작(시공) 진행 및 지원금 신청	➜	정산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후 지급
6. 17~6. 30		7월 말 (예정)		8월 초 (예정)		**8월~9월**		8월~10월

4. 선정 취소,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

▣ 지원선정 취소

· 소상공인 기준(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·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에 해당하는 경우
·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
· 선정 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시공(제작)를 완료한 경우

· 허위, 위법,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
·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시공업체 및 공사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·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· 동일사업 기간 내 군·구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을 중복지원 받고있는 경우
(*중복수혜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)
· 사업 완료 기간(9/30일) 내 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, 증빙서류 부실 제출, 기한 내 사업수행 미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·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, 휴업,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· 관련 법률 위반, 과제부실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▣ 제작(시공)내용 변경 및 포기

· 제출한 견적서의 시공(제작)내용, 시공업체, 시공비용 등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 센터로 제출 **(※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 불가함)**
· 사업변경신청서【별도서식】 제출 후, 센터 변경 승인 후에 시공(제작)을 진행해야 함
·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금액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
·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금액이 하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100%로 감액 조정하여 지급
· 사업 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【별도서식】 센터로 제출해야 함. 포기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, 기간이 경과 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

▣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

· **시공(제작)비용은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(※현금 지급, 카드결제 불가)**
· **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, (은행발급용) 송금확인증 또는 온라인 이체확인증** 제출해야 함.
· 시공(제작)비용 입금 시 대표자 본인 통장에서 시공업체 대표자 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함.
(※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)
·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,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
· 정당한 사유 없이 ①제출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②소요 비용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
·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정당한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급함. 센터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

5. 유의사항

▣ 시공(제작)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

· 신청업체(소상공인)가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
· **시공(제작)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**
·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(제작)내용과 관련된 '업태'와 '종목'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
· 신청업체는 본인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· 업체당 시공 참여는 **최대 3개사 참여 가능함**(시공 참여 개수 초과할 경우 선정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)
·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,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

▣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·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
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 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
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④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•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3자 부당개입, 신청업체 휴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 서류 위변조, 선정통지일 이전 사업 시행,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▣ 기타사항

·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또한 신청·접수 현황, 선정기준표, 업체별 평가점수, 평가순위, 평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
· 서류의 기재 착오, 연락 불능,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·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,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보완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· 사업 포기 및 선정 취소 업체 발생 시,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차순위 예비업체를 추가 선정합니다.

·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,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·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으로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▣ **문의처 :** 생애주기지원팀(☎032-715-4047)

별표 1 소상공인 기준(상시 근로자수,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❶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❷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	상시근로자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10명 미만
2. 음료 제조업	C11		10명 미만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10명 미만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10명 미만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10명 미만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10명 미만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10명 미만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10명 미만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10명 미만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10명 미만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10명 미만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10명 미만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10명 미만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10명 미만
15. 가구 제조업	C32		10명 미만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5명 미만
17. 수도업	E36		5명 미만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5명 미만
19. 광업	B		10명 미만
20. 담배 제조업	C12		10명 미만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10명 미만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10명 미만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10명 미만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10명 미만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10명 미만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10명 미만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10명 미만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10명 미만
29. 건설업	F		10명 미만
30. 운수 및 창고업	H		10명 미만
31. 금융 및 보험업	K		5명 미만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	5명 미만
33. 정보통신업	J		5명 미만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5명 미만
35. 부동산업	L		5명 미만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5명 미만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5명 미만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5명 미만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	10명 미만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5명 미만
41. 교육 서비스업	P		5명 미만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5명 미만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5명 미만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(제조업은 중분류) 기준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표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사업 분류	업 종
56211	일반유흥 주점업
56212	무도유흥 주점업
68	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
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 및 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
	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·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·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「중앙회장이 지정」한 재보증제한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임 관련	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(46463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
	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(47640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전자상거래업(47911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	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(69390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경주장 운영업(91113)	경주장 운영업
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건전 문화 관련	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성인용품 판매점
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흥신소
	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경영컨설팅업(71531) 중	기획부동산업 주)

주)(운영형태)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